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2. 16 선고 2020가단1204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

변론 종결 2021. 1. 12

판결 선고 2021. 2. 1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.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24, 596, 2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4, 596, 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는 원고에게 24,596,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5. 28.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. 8. 22. 'C은 원고에게 9,707,107원 및 그 중 4,803,026원에 대하여 2013. 5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판결(2013가소236032)을 선고하였으며, 이 판결은 2013. 9. 11.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는 C의 어머니로 2017. 1. 10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대금 7,8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7. 1. 13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이 사건 부동산에 C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8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므로,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예비적으로,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가 C인 부동산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인 24,596,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.

나. 판단

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,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, 위 보증금에 4,800만 원을 추가하여 7,8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, ② 위 추가된 4,800만 원은 원고의 딸인 D의 배우자 E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으로, 위 금원이 C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, ③

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3,000만 원 역시 실제 C이 지급한
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 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이
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
증거 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
한다.

판사 강진우

별지